



대표적인 부정근로 사례

※ 분단위 근로시간 입력 가능하나, 월별 총 근로시간에 따라 최종 근로 인정시간이 달라질 수 있음

1 허위근로

- ① 13:35~17:00 근로하였으나 출근부상 근로시작시간을 13:00로 입력한 경우
 - 근로시작시간을 13:35으로 입력하고, 근로시간은 13:35~17:00로 입력해야 합니다.
 - ※ 근로시간은 분 단위로 입력 가능합니다.
 - ※ 30분 단위가 기준(시급 단가의 1/2)이며, 월별 총 근로시간에 따라 인정 근로시간이 달라질 수 있음(월별 총 근로시간이 30분 이상일 경우 30분 인정, 30분 미만일 경우 인정 불가)
- ② 일시적인 휴강(시험기간 전후 강의일정 변동 등) 시간에 근로한 경우
 - 일시적인 휴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시간에 이루어진 활동은 해당 시간이 학업시간표와 중복되어 근로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.
- ③ 근로기관(근로지) 관리자(담당자)와 담합하여 실제 근로하지 않은 내역을 출근부에 입력한 경우
 - 실제 근로하지 않은 내역을 출근부에 작성하는 행위는 허위근로이며, 공공재정 부정청구에 해당합니다. 한국장학재단은 정기·수시점검을 통해 위와 같은 사례를 적발 중에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2 대리근로 : 근로장학생 본인이 아닌 친구 등 제 3자가 대신 근로한 경우

- 재단 및 대학의 자체선발기준에 따라 최종 선발된 장학생이 근로를 진행하여야 합니다. 개인 사정으로 근로가 불가능하여 타인이 대신 근로하였다 하더라도, 이는 근로로 인정되지 않으며 출근부를 입력할 수 없습니다.

3 대체근로

- ① 본인이 출근부를 잘못 작성하거나, 근로기관·대학 담당자에게 출근부 대신 입력을 부탁하거나 오입력된 경우
 - 본인의 실수 또는 타인이 입력하여 문제가 발생한 경우 그에 따른 책임은 근로장학생 본인에게 있습니다. 출근부 내역이 정확한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- ② 실질적으로 근로한 시간과 출근부상 작성 및 입력한 시간이 상이한 경우
 - 10:00~11:00(1시간) 근로를 실시하였으나, 13:00~14:00 근로한 것으로 작성 한 경우

공정하고 투명한 대학생 근로장학사업 운영을 위하여
부정근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
“부정근로로 인한 장학금 수급은 위법입니다.”

「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」이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, 2020년 1월 이후 장학금 지급분부터 해당 법이 적용됩니다. 부정근로(허위근로, 대리근로 등), 행정오류 등으로 부적격자 및 기타 불법행위를 통한 장학금 지급 건에 대하여 **부정이익을 전액 환수하고, 이자, 제재부가금(최대 5배), 가산금이 부과**될 수 있습니다.

환수범위

공공재정환수법 시행(‘20. 01. 01.) 이후 부정근로(허위근로, 대리근로 등), 행정오류 등으로 장학금이 지급된 경우

근태증빙

부정근로 추정대상자가 될 경우, 장학생은 본인의 근태를 반드시 증빙하여야 함. 증빙하지 못할 경우는 부정근로로 간주되어 환수범위에 포함될 수 있음.

※ 환수 대상 금액 = 부정이익 + 이자 + 제재부가금(최대 5배) + 가산금(체납금에 대한 연체료)

대학생 근로장학사업(국가근로장학금, 교사대생 등 대학생 튜터링 장학금, 다문화·탈북학생 멘토링 장학금)에 참여하는 근로장학생 · 근로기관 및 대학담당자는 본 안내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여 부정근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.

- » 출근부는 반드시 장학생 본인이 근로 후 즉시 직접 입력하여야 합니다.
- » 한국장학재단은 공정하고 투명한 대학생 근로장학사업 운영을 위하여 군복무기록·출입국기록 등을 활용하여 부정근로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.



부정근로 유형

1 허위근로 : 근로를 하지 않았거나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근로한 것처럼 허위로 출근부를 작성 및 입력한 경우

예시

- » 1시간 근로 후 2시간 이상 출근부를 작성한 경우
- » 1일 10시간 근로 후 8시간을 입력하고 다른 날짜에 2시간을 입력하는 경우
- » 근로기관과 담합하여 고가의 제품 판매 실적 등에 따라 근로시간을 추가 인정하는 경우 등

2 대리근로 : 근로장학생 본인이 아닌 타인이 근로를 대신 한 경우

예시

- » 근로장학생 본인이 아닌 친구 등 제 3자가 근로를 대신하여 진행한 경우 등

3 대체근로 : 실제 근로한 시간과 출근부상 작성 및 입력한 근로 시간이 상이한 경우

예시

- » 10:00~11:00(1시간) 근로를 실시하였으나, 13:00~14:00 근로한 것으로 작성한 경우
* 본인 및 기관/대학담당자의 실수로 오입력된 경우도 포함

부정근로에 대한 조치사항

※ 부정근로로 확인될 경우, 대학생 근로장학사업(국가근로장학금, 교사대생 등 대학생 튜터링 장학금, 다문화·탈북학생 멘토링장학금) 전체 참여제한

근로장학생

- 1 허위근로** : 장학금 환수 및 확정일로부터 2년 근로 참여 제한
- 2 대리근로** : 장학금 환수 및 근로장학생과 대리근로자 모두 확정일로부터 1년 근로 참여 제한
- 3 대체근로** : 확정일로부터 1년 근로 참여 제한

※ 국가장학사업 운영규정 제15조와 관련하여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수사기관에 수사의를, 고소·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근로기관

부정근로 관련 기관(교내근로지 포함) 제재 기준		
유형	1차	2차
허위근로	서면 경고	확정일로부터 2년 사업 참여 제한
대리근로		확정일로부터 1년 사업 참여 제한
대체근로		

※ 부정근로 조장 등 사유의 경중에 따라 재단은 즉시 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, 최대 2년 제한 가능

근로기관 자격해제 발생사유

- » 장학생 배정 후 일방적으로 배정을 취소하는 기관
- » 사업 취지에 반하여 재단이 금지한 업무를 근로하게 한 기관
- » 장학생의 출근부 검토·승인 등 장학생 근태관리가 전반적으로 불량한 경우
- » 장학생의 부정근로가 발생하거나 조장하는 경우
- » 장학생 간 이해관계 회피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
- » 특정 성별, 군 경력 및 기 근로경험을 우대하여 장학생 선발 배정을 요구하는 경우
- » 장학생이 업무 중 유해요인에 노출될 우려가 있거나 장학생을 대상으로 필수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
- » 장학생을 활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경우
- » 형사 사건 연루, 성희롱, 폭행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
- » 민원의 내용이 사실이라고 확인되는 경우
- » 정당한 사유 없이 재단 현장점검을 일방적으로 거부하는 경우
- » 기타 해당 기관이 사업 목적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

사업참여대학

- 부정근로 유의대학 지정
- 부정근로 조장 등 사유의 경중에 따라 재단은 즉시 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, 최대 2년 제한 가능
- 대학 관계자가 부정근로를 조장하거나 부정근로를 인지하였음에도 미처리할 경우 소속대학 예산 삭감

근로중지 자진신고제도

근로장학생이 해외여행 등의 사유로 근로를 일시 중단할 경우, 근로중지 자진신고 실시

- ① 근로장학생은 신고 전 반드시 근로기관(근로지) 및 대학 담당자에게 근로중지 안내
- ② 신고방법: 재단 홈페이지 → 국가근로장학금 → 근로장학관리 → 근로중지 사전신고
 - ※ 근로중지 사유에 따라 증빙자료 첨부 필요 (병적증명서, 항공권 등), 미첨부시 추후 부정근로 추정대상자로 지정되어 별도 소명 필요
 - ※ 근로중지로 신고한 기간동안 출근부 입력 불가

부정근로 사례 신고

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(www.kosaf.go.kr) → 고객센터 → 의견있어요 → 전자민원